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37
----------	-----

2016년 3월 8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12월 10일, 최판술 의원, 장우윤 의원
2.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1일
3. 상정일자 : 2016년 3월 8일
 -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16년 3월 8일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판술 의원)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관련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안 제5조)
-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5년 12월 10일 최판술 의원과 장우윤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37호로 공동발의 되어 2015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시설관리와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정부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6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4개 분야 10대 과제)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¹⁾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이 발생하여 이 중 사망자는 없었고 160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대부분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 및 부주의(97.5%)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사고는 추락

-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은 크게 교육기관에 설치된 시설과 그 외의 일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구분되는데, 특히 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하루 일과 중 수업이 없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1]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

	유치원	학교	학원
2013	3	17	0
2014	0	3	0
2015	1	1	0

-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따라 교육장과 기초단체장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관리주체에 따른 실질적 안전관리와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권고안(의안번호 제2015-2호, 2015.1.26.의결)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부실한 안전점검과 배상보험 미가입 및 안전교육 미

(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손상정도는 골절(66.3%),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등의 순이며, 뇌진탕(1.3%)도 2명이나 포함…”,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절실-국민안전처,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분석결과」 2016.2.17., 보도자료.

국민안전처, 2016년 업무계획 “어린이 안전종합대책(4개 분야 10대 과제)” 2016.1.16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 육성·전파 - 안전시설 확충 및 사고위험구역 진단·개선 -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전개
2.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 개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합동점검 및 단속·지도 -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서치 확대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강화
3. 내실있는 어린이 안전교육 여건 조성	- 안전교육 콘텐츠 포털 구축 및 개발·보급 -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 어린이 수상 안전교육 확대
4. 어린이 안전 평가·환류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어린이 안전 수준 평가·환류

이수 등 관련법령에 따른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는 관리주체들의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안전점검 의무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총시설수	교육청				지자체				
		시설수	학교	유치원	학원	시설수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
서울	9,243	1,209	623	556	30	8,034	5,499	1,418	897	220
전국	66,311	13,989	6,325	7,571	93	52,322	32,658	8,913	8,665	2,086

나. 조문별 검토

1) 총칙부분에 대한 의견(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목적 규정,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동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1조와 안 제2조제2호의 경우 동 조례안의 관리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모두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원의 놀이시설에 대한 소유자, 설치자 등의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로 규정하게 되면 공립학교(공립유치원 포함)만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²⁾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유치원 포함) 및 학원의 구분 없이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한 관리·감독권을 축소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³⁾

따라서 안 제1조 중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문장은 삭제하고, 안 제2조제2호의 경우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상위법령과 같이 “학교, 유치원, 학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연동하여 안 제2조제3호의 경우에도 관리주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학교장, 유치원장, 학원장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동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장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관리계획에는 안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및 안 제3호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사항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보건법」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학교 전체(어린이 활동공간 등)의 위생관리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 활동공간과 관련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체육건강과-847(2016.1.21.))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항목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상태와 위험물질의 존재여부도 명시되어 있는바,⁴⁾ 안 제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하겠습니다.

- 안 제3조제2항제5호는 “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⁵⁾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을 구축하여 현재 중앙정부 및 전국의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제11조제2항 관련)

1. 안전점검의 항목

-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 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노후(老朽) 정도
-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변형 상태
-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청결 상태
- 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 바.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9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23개의 안전관리 전문기관(붙임 참조) 중 안전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동 조문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이미 국민안전처에서 구축한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1개 업체가 보유한 안전관리시스템만을 활용하도록 됨으로써 독점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 제3조제2항제5호 중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을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독점해소 차원에서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편 안 제3조제2항제7호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동 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이 없음을 근거로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 안 제3조제3항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어린이, 보호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QR코드 설치가 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삭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운영중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세부적인 안전검사내용 및 시설현황,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 습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QR코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3] 위생관리와 시스템 구축관련 비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위생관리(모래소독)		957,000	957,000	957,000	957,000	957,000	4,785,000
잔류세균오염도검사		210,975	210,975	210,975	210,975	210,975	1,054,875
시스템 구축·운영	설치비	297,000					297,000
	운영사용비	79,200	79,200	79,200	79,200	79,200	396,000
	QR코드설치비	79,728					79,728
	위탁안전점검	2,870,208	2,870,208	2,870,208	2,870,208	2,870,208	14,351,040
	시스템교육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소계	3,328,136	2,951,408	2,951,408	2,951,408	2,951,408	15,133,768
소계(b)		4,496,111	4,119,383	4,119,383	4,119,383	4,119,383	20,973,643

3)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의견(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이미 규정된 내용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⁶⁾

○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교육장이 지방보조금⁷⁾의 형식으로 지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6호(2015.1.1.)

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리주체 중 교육장의 예산 지원의 범위는 보조금 형식의 지원이 가능한 학원장에 한정되고 학교장과 유치원장의 경우(국·공립)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바, 안 제4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 그 밖에 안 제5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제한, 제6조 안전점검, 제7조 안전감시원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⁸⁾

다. 끝으로

○ 동 조례안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제한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흡연금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의 이용제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16년 1월 7일 개정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6년 7월 8일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개정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의 내용, 지도·점검 계획의 방법 등”(동법 제17조의2 신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의 경우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도 있으므로 향후 시행령의 개정 추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의 범위를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함.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함.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비용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규정을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937
----------	-----------

제안년월일 : 2016년 3월 8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와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일부 조문의 규정 범위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시설과 무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대상의 범위를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무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장의 비용 지원을 보조금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 지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관련 규정을 수정함(안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스설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스설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어린이놀이스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 놀이스설 중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스설의”를 “「어린이놀이스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스설의”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놀이스설”이란 「어린이놀이스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스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제5호 중 “법 제2조 2의 놀이스설”을 “어린이놀이스설”로 하고, “국가에서”를 “국가 또는 국가에서”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 중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u>」에서 정한 <u>어린이 놀이시설 중 서울 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의</u>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u>」에 따른 <u>어린이놀이시설의</u>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 (생략)</p> <p>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u>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u> 말한다.</p> <p>3. “관리주체”란 <u>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u> 말한다.</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u>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u>」 [별표 2] 중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u>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u> 말한다.</p> <p>3. “관리주체”란 <u>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u> 말한다.</p>
<p>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5. <u>법 제2조 2의 놀이시설</u> 안전을 위해 <u>국가에서</u>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p> <p>6. (생략)</p> <p><u>7.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u></p> <p>8.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1. ~ 4. (원안과 같음)</p> <p>5. <u>어린이놀이시설</u> 안전을 위해 <u>국가 또는 국가에서</u>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p> <p>6.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7.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 ② (생략)</p> <p>③ <u>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p>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 ②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u>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규칙으로</u> 정한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놀이시설 사용자 안전 수칙 고지를 위하여 놀이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 고지 의무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놀이시설 전수실태 조사, 안전관리자 현장 연수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장은 제2항의 내용을 QR코드 등의 신기술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